

사업 연도	· · · ~ · · ·	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1. 대상법인

① 법 인 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표자 성명		④ 업 종	
⑤ 본점 소재지	(전화번호 :)		

2. 양도자산내역

⑥ 자산명	⑦ 자 산 소재지	⑧ 면 적 (㎡) 수 량 (개)	⑨ 양도일자	⑩ 양도가액	⑪ 취득가액	⑫ 양도차익 (⑩-⑪)	⑬ 이월 결손금

3.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

익금불산입		분 할 익 금 산 입 (계 획)									
⑭ 사 업 연 도	⑮ 금 액	1차 연도		2차 연도		3차 연도		4차 연도		5차 연도	
		⑯연도	⑰금액	⑱연도	⑲금액	⑳연도	㉑금액	㉒연도	㉓금액	㉔연도	㉕금액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
[제30조제11항
[제43조의4제7항
[제44조의4제7항
[제79조의3제8항
[제79조의6제6항
[제79조의8제8항
[제79조의9제8항
[제79조의10제9항
[제104조의16제6항
[제116조의35제10항
[제116조의37제8항

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
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: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※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해야 합니다.

작성 방법

-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.
-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·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.
-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.
- ⑬란의 이월결손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-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 - 가.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,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,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,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,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및 기획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$$[\text{양도차익}(\text{⑫}) - \text{이월결손금}(\text{⑬})] \times \frac{\text{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}^*}{\text{양도가액}(\text{⑩})}$$

구 분	가 액*
•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0조)	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(예정)가액
•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9조의6제6항)	신규보육시설 취득(예정)가액
•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9조의8)	지방 공장의 취득(예정)가액
•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9조의9)	신규 공장의 취득(예정)가액
•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9조의10)	지방물류시설의 취득(예정)가액
•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6)	수익용재산취득(예정)가액
• 기획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37)	신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(예정)가액

- 나.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3조의4제7항) 및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4조의4, 제116조의35) : ⑫양도차익 - ⑬이월결손금
- 다.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9조의3제8항)

$$[\text{양도차익}(\text{⑫}) - \text{이월결손금}(\text{⑬})] \times \frac{\text{지방공장취득 (예정)가액}}{\text{양도가액}(\text{⑩})} \times \left(1 - \frac{\text{지방공장면적} - \text{기존 공장}}{\text{면적의 100분의 120}}\right)$$

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